

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부천시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 설립을 추진하고 원활한 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원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
제3조(명칭과 소재지) ①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립하는 공공의료원의 명칭은 부천시의료원이라 한다.

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천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.

제4조(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① 의료원 설립 일정
- ② 의료원의 위치
- ③ 의료원의 규모·운영 등 사업 방향
- ④ 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산출 및 재정보호 방안
- ⑤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

제 5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부천시 행정부시장과 부천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의료원 소관 상임위원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시의회 의원 2명

2. 시 의료원 업무 관련 담당 실·국장 1명

3. 부천시보건소장

4. 시의회에서 추천한 보건·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

명

5. 시장이 추천한 보건·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

6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

7.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설립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의료원 개원까지로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1.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-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 6조에 따라 의료원 정관을 제정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제7조(사업)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민 진료사업
 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
 3. 의료인·의료기사 및 시민 보건교육사업
 4.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
 5.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
 6.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
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
-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·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·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(보조금 등) ①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의료원이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

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.

④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·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비용부담) 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의료원 원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의료원은 공공의 목적에 따라 국가, 시 및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, 시 및 기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제10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① 시장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,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(“물품”을 포함한다)을 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,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